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舊.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아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인)		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사실
성 명	주 소		
이*열 (64.**.13.)	세종특별자치시 (이하생략)	업무정지 4.5개월 (2024.1.1.~2024.5.15.)	경력 거짓신고

2.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3. 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기 타

-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담당자(☎ 042-670-32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